

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721호, 「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은 '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인 신청사 사업 규모 조정(축소)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이로 인해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이 지연되고 정책사업(비용자성사업비) 시설비 등이 증감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(수입계획) 총 167억 2,738만원 감소

- 교특회계전입금 188억 9,005만원 감소(보통교부금 감액, 서대문구 천연동 116 매각 지연 및 수색동 129-2 관련 협의 지연 등)
- 예치금회수 17억 7,194만원 증가(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반영)

- 이자수입 3억 9,072만원 증가(2021년 12월까지 예상 이자수입 반영)

나. (지출계획) 총 167억 2,738만원 감소

- 비용자성사업비 301억 1,886만원 감소(신청사 사업 규모 조정 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 계획 변경)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항 목	당 초 계 획 (A)	변 경 계 획 (B)	증 감 (C = B - A)
본청시설관리(설계비)	13	234	220
본청시설관리(시설비)	31,312	1,368	△29,944
본청시설관리(감리비)	1,638	1,350	△287
본청시설관리(시설부대비)	200	92	△107
합 계	33,165	3,046	△30,118

- 예치금 133억 9,147만원 증가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당 초 계 획 (A)	변 경 계 획 (B)	증 감 (C = B - A)	항 목	당 초 계 획 (A)	변 경 계 획 (B)	증 감 (C = B - A)	증 감 율 (D = C / A)
합 계	97,652	80,925	△16,727	합 계	97,652	80,925	△16,727	△17.1
교특회계 전입금	39,002	20,112	△18,890	비용자성 사업비	33,165	3,046	△30,118	△90.8
예치 금수	58,165	59,937	1,771	예치 금	64,487	77,878	13,391	20.7
이자수입	484	875	390					

Ⅲ. 검토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'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(976억 5,200만원)보다 △17.1%, △167억 2,700만원을 감액하여 수입·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¹⁾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수입계획이 당초보다 △167억 2,700만원 감액됨에 따라 지출계획도 이와 연동하여 △167억 2,7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
 - 지출계획의 경우, ①정책사업인 **기관운영관리**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(331억 6,500만원)보다 △90.8%, △301억 1,900만원 감액하고, ②정책사업인 **예비비 및 기타**의 지출계획도 당초 계획(644억 8,700만원)보다 66.9%, 133억 9,1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「지방기금법」 과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²⁾은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당초 동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은 ①**기관운영관리**, ②**예비비 및 기타**로 기재하여 제출되어야 하나,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“정책사업”을 배제한 채 **비용자성사업비, 예치금**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제출한 것으로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'20. 7), p.302

- 부정확한 정책사업을 기재함으로써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의회에 제출된 동 안건은 법규에 따라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○ 동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중 수입계획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면, ①**교특회계전입금** 항목은 당초 계획(390억 200만원)보다 △188억 9,000만원을 감액한 201억 1,200만원으로 수입계획한 것으로,

- 공유재산 매각 지연³⁾으로 토지매각대금이 당초 계획(114억 200만원)보다 △50억 9,000만원 감액되고,
- '2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중 청사 신설비의 경우에도 당초 예상 교부액⁴⁾(276억원)보다 감액되어 확정 교부(138억원)됨에 따라⁵⁾ 당초 계획(276억원)보다 △138억원 감액한 것임

- 아울러 수입계획중 ②**예치금회수**의 경우에는 '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당초계획(581억 6,500만원)보다 17억 7,200만원 증액된 599억 3,7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며

- ③**예금이자수입**도 당초계획(4억 8,400만원)보다 3억 9,100만원 증액된 8억 7,5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여 제출하였음

3) (매각지연)서대문구 천연동 116

(도로선형 변경 협의지연)서대문구 수색동 129-2 관련 수색7구역 조합

4) 서울특별시교육청, 학교지원과-11240('20. 8.11), “2021년도 학교신설비 및 청사신설비 등 예정교부 신청 자료제출”

- 청사신설 이전비 : 276억 3,700만원

- 산출근거 「청사 신설·이전비 교부기준」 : 표준 건축연면적 33,355m²×단가 2,762원×적용률 30%

5) 교육부, 지방교육재정과-1303('21. 2.24) “202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”

- (서울)기준재정수요액 8,681,372백만원 중 청사신설 이전비 138억 1,800만원

〈표 3-1〉 수입계획 세부 변경내역

(단위: 백만원,%)

장 / 관 / 항 / 목	당 초	변 경	증 감	증 감 률
합 계	97,652	80,925	△16,727	△17.1
자 체 수 입	484	875	391	80.8
이 자 수 입	484	875	391	80.8
이 자 수 입	484	875	391	80.8
예 금 이 자 수 입	484	875	391	80.8
기 타	58,165	59,937	1,772	3.0
예 치 금 회 수	58,165	59,937	1,772	3.0
예 치 금 회 수	58,165	59,937	1,772	3.0
예 치 금 회 수	58,165	59,937	1,772	3.0
내 부 거 래	39,002	20,112	△18,890	△48.4
전 입 금	39,002	20,112	△18,890	△48.4
전 입 금	39,002	20,112	△18,890	△48.4
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39,002	20,112	△18,890	△48.4

○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①정책사업인 **기관운영관리**의 경우, '19년 9월 통과된 '서울특별시교육청사 이전'에 대한 교육부 중앙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'20년 10월, 재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사 결과 조건변경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⁶⁾

- 조건부 이행을 위하여 설계 및 공사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공사 착수시기가 당초 '21년 4월에서 '22년 1월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⁷⁾

- 시설비·감리비·시설부대비는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303억 3,900만원 감액하고, 설계비는 2억 2,000만원 증액하여 해당 정책사업이 당초(331억 6,500만원)보다 △90.8%, △301억 1,800만원 감액하여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됨

○ 또한 ②정책사업인 **예비비 및 기타**의 경우, 당초계획(644억 8,700만원)보다 20.7%, 133억 9,100만원 증액된 778억 7,800만원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제출됨

- 동 기금운용계획의 경우, 당초 지출계획중 예치금이 편성된 **예비비 및 기타**를 “교육”분야, “교육일반”부문에 구조화 하였으나,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「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“예비비”분야·부문으로 변경하여 제출한 바,

6) 교육부, 지방교육재정과-8312('20.12.22), “2020년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”

7) 서울특별시교육청, 교육시설안전과-1983('21. 3. 3), “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을 위한 신청사 사업규모 조정(축소) 계획(안)”

■ ('19. 9.25) 교육부, 중앙재정투자심사 조건부(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) 통과

■ ('20. 9.14) 서울시교육청,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변경

- 사업비 : (당초)1,321억원 → (변경)1,299억원

- 공사시행 : (당초)2019.10~2021.11 → (변경)2021. 4~2021. 1

■ ('20.10. 6) 교육부, 중앙재정투자심사 조건변경 신청 반려

- 사유 : 재심사 요건 부적합

■ ('21. 2.24) 교육부, '21년도 신청사 신설비 신청액 276억원 대비 △50%, △138억원 감액 통보

- 사유 : 조건부 승인내역 중 사업규모축소 미이행

■ ('21. 3. 3) 서울시교육청, 신청사 사업규모 조정 계획

- 사업비 : (당초)1,321억원 → (변경)1,299억원

- 공사시행 : (당초)2019.10~2021.11 → (변경)2022. 1~2024.11

- 우리 위원회가 지난 '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시⁸⁾ 지출계획 예산 구조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어 기금운용부서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의회의 의결 취지를 존중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2〉 예산구조 수정 내역

지출계획 (당 초)						지출계획 (변 경 안)					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
[050]교육						[160]예비비					
[054]교육일반						[161]예비비					
[01]예비비및기타						[01]예비비및기타					
[01]예비비및기타						[01]예비비및기타					
[03]내부유보금						[03]내부유보금					
예치금						예치금					

〈표 3-3〉 지출계획 세부 변경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사업내역	당 초	변 경	증 감	증 감 륜
합 계	97,652	80,925	△16,727	△17.1
기 관 운 영 관 리				
교 육 행 정 기 관 시 설				
본청시설관리(신청사건립)	33,165	3,046	△30,119	△90.8
설 계 비	13	234	221	1700.0
시 설 비	31,312	1,368	△29,944	△95.6
감 리 비	1,638	1,350	△288	△17.6
시 설 부 대 비	200	92	△108	△54.0
예 비 비 및 기 타				
예 비 비 및 기 타				
내 부 유 보 금				
예 치 금	64,487	77,878	13,391	20.7

8) 「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」 ('21. 7. 2), p.4~5